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1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1년 12월 24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12월 29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022.1.13.)에 따른 부서 신설,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을 위해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027명에서 19,064명으로 37명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서 신설 등 인력 증원
 - (의회사무처) 4급 +1명, 5급이하 +10명
- 나.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 (의회사무처) 5급이하 +26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예정) 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총 27명 배치 예정임(순증 +26명, 재배치 1명)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서 신설 등을 위한 인력충원을 위해 37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정책기획담당관 신설(4급 +1명, 5급 이하 +29명, 재배치 +1명)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계 도입이 지속적으로 주장되면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021.1.13. 전부개정)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2022.1.13. 시행).
-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도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²⁾.
- 다만, 「지방자치법」 부칙에서 정책지원관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절반씩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음.³⁾
- 이에 개정안은 2022년에 임기제 6급으로 정책지원관 27명을 배치하기 위해 6급 26명을 순증하고 1명을 재배치하고 있음.
- 또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요구되어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 4급 1명과 행정 5급 이하 3명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있음.

- 시의회사무처는 운영전문위원실의 정원(임기5급 2명)을 활용해 정책 기획담당관을 3개 팀(정책기획팀·정책지원 1팀·2팀)으로 구성하고 정책 지원관을 배치·관리할 계획임.

<정책기획담당관 조직 및 업무 분장 계획>

구 분	업무내용	인 력
정책기획담당관	◦ 정책기획담당관 업무 총괄	◦ 행정4급 1
정책기획팀	◦ 정책지원관 배치 및 관리 ◦ 부서 서무·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회의자료 작성·회의개최 및 지원 ◦ 행사개최 지원	◦ 행정5급 1 ◦ 행정6급 1 ◦ 행정7급 1
정책지원1팀	◦ 국회 및 정부, 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대외협력업무 ◦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업무 지원	◦ 임기제5급 1 ◦ 행정6급 1 ◦ 임기제6급 14(정책지원관)
정책지원2팀	◦ 시정 및 교육행정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 등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업무 지원	◦ 임기제5급 1 ◦ 임기제6급 13(정책지원관)

-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될 정책지원관의 배치, 복무관리, 직무교육 등을 전담해 시의원의 지원인력인 정책 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 동안 지방의회는 의원별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정책지원관의 규모를 의원 정수의 1/2로 한정하였고, 특히 2022년에는 의원정수의 1/4인 27명만 운영됨에 따라 의정지원 인력의 공백이 우려됨.

- 따라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과 직무훈련 등 정책지원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 제도 담당 인력 증원(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해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었음.
- 그러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⁴⁾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독립해 별도 제정되었음(2021.10.19.).
- 개선된 주민발안 제도는 청구권자 연령의 하향(19세 이상→18세 이상), 주민서명 수의 완화, 전자방식의 청구시스템 구축, 임기말 자동폐지 예외 적용 등을 통해 주민의 입법주권을 강화하였음.

-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4) 국내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그 동안 전국에서 총 277건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되었음(연평균 13건)(하혜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25호, 2021. 12. 10, 국회입법조사처)

관한 조례안'은 연대서명자의 수를 25,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종전의 82,615명(2021년 11월 기준, 19세 이상의 1/100)보다 30.3% 수준
 으로 대폭 완화되었음.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종전 제도	현행 제도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주민서명 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시·도</th> <th rowspan="2">1/100 이상 1/70 이하</th> </tr> <tr> <th>기초</th> <th>50만명 이상 대도시</th> </tr> </thead> <tbody> <tr> <td></td> <td>시·군 및 자치구</td> <td>1/50 이상 1/20 이하</td> </tr> </tbody> </table> <p>※ 서울시 : 1/100</p>	시·도		1/100 이상 1/70 이하	기초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군 및 자치구	1/50 이상 1/20 이하	<table border="1"> <tbody> <tr> <td>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의 시·도</td> <td>200분의 1</td> </tr> <tr> <td>인구 800만 미만의 시·도 특별자치시·도</td> <td>150분의 1</td> </tr> <tr> <td>인구 100만 이상의 시</td> <td></td> </tr> <tr> <td>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td> <td>100분의 1</td> </tr> <tr> <td>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td> <td>70분의 1</td> </tr> <tr> <td>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td> <td>50분의 1</td> </tr> <tr> <td>인구 5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td> <td>20분의 1</td> </tr> </tbody> </table>	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의 시·도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시·도 특별자치시·도	150분의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100분의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70분의 1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50분의 1	인구 5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20분의 1
시·도		1/100 이상 1/70 이하																						
기초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군 및 자치구	1/50 이상 1/20 이하																						
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의 시·도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시·도 특별자치시·도	150분의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100분의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70분의 1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50분의 1																							
인구 5만 미만의 기초 지자체	20분의 1																							
청구서명,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명부 보정기간(광역 5일 이내, 기초 3일 이내) ·무효서명: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연장(광역 15일 이상, 기초 10일 이상) ·무효서명 기준 구체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을 법률로 명시 ·청구권자가 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한 조치 의무화 																						
조례안 발의	·청구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자치단체장이 발의	·청구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이 발의																						
지방의회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기간 : 규정 없음 ·의원 임기만료시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기간 :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임기만료로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 청구요건 중 주민 서명수의 경우 세종(1/100 이상 1/20 이하), 제주(1/110 이하)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별도 규정

- 특히, 주민조례청구의 접수처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청구 가능 연령 하향과 요건 완화 등으로 종전보다 청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에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있음.
- 행정6급은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례의 제·개정, 조례청구 요건 확인 등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행정7급은 주민조례청구 홍보·교육, 통계 관리 등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 그 동안 서울시는 2000년 이후부터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여(연 0.5건), 주민발안 제도 역시 저조한 실적으로 유명 무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2022.1.13)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라. 지방의회 윤리·청렴 업무 전담 인력 증원(행정 5급 1명, 행정 6급 이하 +3명)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무적 설치와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2021.5.18.) 지방의원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지방의회 의장은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켜(제2조제2호)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소속 기관의 가족채용 제한(제11조), 소속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등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대응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 요구되어 행정 5급 1명과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2명을 증원하고 있음.
- 시의회사무처는 증원된 인력을 활용해 의정담당관 내에 의회윤리팀을 신설할 계획임.
- 이처럼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서 지방의원에게 강화된 윤리적 기준과 청렴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마. 법적 검토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증원(행정 6급 +1명)

- 시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입법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적검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사무처의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입법담당관에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경력 채용을 통해 변호사를 임명할 계획임.
- 향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채용, 복무, 보수, 징계의결 등에 따른 법적 검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